

의안번호	2219472
의 퇴 인	유용원의원
회 답 일	2026.9.7.
추계번호	26D3224

서울대병원 집단학살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서울대병원 집단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서울대병원 집단학살 사건 ¹⁾ 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 및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서울대병원 집단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둔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의무규정
		-위원회는 심의·의결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음	재량규정
2	안 제4조(서울대병원 집단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 소속으로 서울대병원 집단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함)을 둔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의무규정
3	안 제7조(진상규명 조사와 자료의 수집 및 분석)	-위원회는 최초 진상규명조사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진상규명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진상규명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4	안 제9조(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위원회는 제7조의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서울대병원 집단학살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의무규정
		-위원회는 서울대병원 집단학살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재량규정
5	안 제13조(위령사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울대병원 집단학살 사건 희생자를 위령하기 위한 위령묘역 조성, 위령탑 건립, 위령공원 조성 등의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5년 ‘서울대병원 집단 학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통해, 북한 인민군의 ‘서울대병원 국군 전상병과 민간인 집단 학살’ 사실을 확인하고,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발생한 민간인 희생에 대해 가해주체에 상관없이 희생자와 유족들이 배·보상을 포함한 실효적이고 충분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과 피해자와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법률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국가(국회)에 권고하였음(2025.4.8.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보도자료 참고)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3조(서울대병원집단학살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4조(서울대병원집단학살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3	안 제7조(진상규명조사와자료의 수집 및 분석)	
4	안 제9조(진상조사보고서작성)	
5	안 제13조(위령사업)	

2. 상세 사유

- 위원회·실무위원회·보고서작성기획단 설치 등(안 제3조·제4조·제7조·제9조)
 - 제정안은 서울대병원 집단 학살사건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소위원회·자문기구·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이에 따른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제정안은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실무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제정안에 따라 설치될 위원회·실무위원회·소위원회·보고서작성기획단의 조직 및 인력 규모 등을 현 시점에서 추정하기 어렵고 이에 대한 추가재정소요를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음
 - 참고로,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로 현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운영 중인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와 여수·순천 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운영 및 예산 현황은 다음과 같음

<참고> 과거사관련 위원회 운영 및 예산 현황

구분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여수·순천 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위원회 구성일	2000.8.28	2022.1.21
존속기한 및 근거	별도 규정 없음	2027.10.4.(여순사건법 제7조)
위원장	국무총리	국무총리
위원 수(위원장 포함)	25명	15명
예산(2026년도)	○ 회의운영예산: 83백만원	○ 회의운영예산: 304백만원
	○ 사무국예산: 19백만원	○ 사무국예산: 1,418백만원 (지원단 및 보고서작성기획단 운영)
	○ 사업예산*: 15,830백만원 - 제주4·3실무위원회 운영 : 77백만원 - 희생자 추념식 : 1,196백만원 - 4·3사건법 후속조치 : 3,202백만원 - 유적보존 및 유해발굴사업 : 1,135백만원 -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 : 5,608백만원 - 제주4·3평화재단 출연금 : 3,800백만원 등	○ 사업예산: 2,771백만원 - 실무위원회 운영 : 141백만원 - 위령사업 지원 : 360백만원 - 사실조사단 구성·운영 : 990백만원 - 여순사건 역사유적지 발굴 및 정비 : 100백만원

* 제주4·3위원회 사업예산은 보상금 지급 예산은 제외한 금액임

자료: 행정안전부 소관 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2026.6.30. 기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Ⅱ-1)자료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안 제13조 관련 위령사업에 대한 추가재정소요는 위령사업 계획이 구체화된 이후에 추계가 가능할 것이므로, 구체적인 계획이 부재한 현 시점에서는 이와 관련한 추가재정소요 추계가 곤란함

Ⅲ. 부대의견

- 없음

I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전상욱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전상욱	02-6788-4673	flyhigh@assembly.go.kr